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發展過程과 그 目錄 規則에 관한 考察

裴 永 活*

〈目 次〉

- | | |
|-------------------------------------|--------------------------------|
| I. 緒 論 | 1.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
規則의 意義 |
| II.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發展
過程과 파니저의 圖書館活動 | 2.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
規則의 體系 및 內容分析 |
| 1.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發展過程 | |
| 2. 파니저의 圖書館活動 | IV. 要約 및 結論 |
| III.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의
意義와 體系 및 內容分析 | |

I. 緒 論

資料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태를 간략히 記述하고 있는 目錄은 역사적으로 圖書館의 가장 오래된 技術(craft) 가운데 하나로서¹⁾ 장구한 來歷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目錄의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작성을 위해 그 原則과 技法을 成文化한 目錄規則은 오늘날까지 東西古수를 통하여 수차례 발표되었으며, 그 가운데 다수의 目錄규칙들은 실제업무에 채택되어 오랜기간 사용되거나 혹은 다른 目錄規則의 작성에 그 理論의 기반을 형성하는 등 目錄규칙의 開發과 普及에 크게 기여하였다.

* 慶北大 圖書館學科 講師

1) Girja Kumar and Krishan Kumar, *Theory of Cataloging*. 4th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1982), p. 115.

당초 目錄規則은 특정 도서관 또는 특정 장서의 目錄作成을 위해 制定 되었으므로²⁾ 대개 한 개인의 재능에 의해 圖書館組織에 따라 목록규칙이 검토되는 단계에 머물렀을 뿐, 19세기 중반까지도 한 나라의 標準目錄規則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록규칙 가운데 오늘날 英美目錄規則의 元祖로 또는 現代目錄法의 原則과 慣行을 확립한 목록규칙이라 할 수 있는 大英博物館目錄規則을 本稿의 論題로 채택한 緣由는 이제까지 시도된 英美目錄規則에 관한 研究들은 주로 그 發展過程과 構成要素 및 書誌記述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특정목록규칙의 형성배경과 규칙내용의 세부적인 分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大英博物館圖書館의 발전과정, 그리고 목록규칙 제정을 주도한 파니찌(Anthony Panizzi)의 圖書館活動을 살펴본 후 그 목록규칙의 의의, 체계, 내용 등을 分析하였다.

II.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發展過程과 파니찌의 圖書館活動

1.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發展過程

(1) 大英博物館圖書館의 成立과 資料蒐集

大英博物館(British Museum)은 런던에 있는 英國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1753년 議會의 의결에 따라 설립되었고, 1759년에 公衆에게 開館되었다. 그런데 이 博物館은 설립 당시부터 圖書館을 竝設하고 있어 한 조

2) 丸山昭二郎 編, 新·目錄法と書誌情報(東京: 雄山閣, 1987), p. 177.

직체에 國家博物館과 國家圖書館이 공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³⁾ 이 圖書館을 대영박물관의 주요부서로 두어 왔다. 이와 같은 大英博物館圖書館은 설립 이전부터 王室圖書館의 장서를 중심으로 貴族들의 개인장서를 다수 기증받아 대규모의 도서와 필사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증도서들로는 대영박물관도서관설립에 박차를 가한 슬론卿(Sir Hans Sloane)의 장서를 비롯하여 코튼卿(Sir Robert Cotton)의 장서, 할레이안(Harleian)장서 등이 있다. 당시 의사인 동시에 古物蒐集家이며 왕립 학회의 회장이었던 슬론경은 박물학 및 지리, 동물, 의학현상에 관한 장서를 비롯하여 그리스, 로마, 이집트 및 동양의 古器物과 그림, 그리고 당시 귀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다수의 도서와 필사본들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1753년 92세로 죽을 때 유언으로 이들을 국가에 기증하였다. 또한 코튼경은 1535년 수도원의 해산으로 분산된 중세시대의 文獻 및 역사기록물과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의 사본, 그리고 베이어울프(Beowulf)의 필사본 등을 수집, 보존한 코튼장서(the Cottonian Collection)를, 하리 등(Robert and Edward Harley)은 필사본과 두루마리 등으로 구성된 할레이안장서를 각각 대영박물관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초기의 이 세 가지 장서에 1757년 조지2세(King George II)가 1470년 에드워드 4세 때 부터 수집, 보존하여 온 왕실도서관(the Old Royal Library)을 네번째의 주요 콜렉션으로 박물관에 기증하였다.⁴⁾ 이상의 네 콜렉션은 초기 대영박물관도서관 장서구성의 근간을 이룩하였다.

3) 大英博物館圖書館은 1973년까지 英國의 國家 圖書館이었다(K.C. Harrison, "United Kingdom," in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Chicago : ALA, 1980), p. 571.

4) Janice Anderson, *The British Library, The Reference Division Collections* (London : British Library, 1983), pp. 3~4.

이후에도 大英博物館圖書館의 자료수집은 계속 수행되어 왔다. 1820년에는 뱅크卿(Sir Joseph Bank)으로 부터 아이슬란드에 관한 도서들과 더불어 식물 및 동물학에 관한 포괄적인 도서들을 기증 받았고, 1823년에는 조지3세(King George III)가 관리하여 온 대규모의 개인도서관을 취득하였으며⁵⁾ 1825년에는 주로 16세기부터 18세기의 불란서 및 이태리 작가들의 왕복서신 등으로 구성된 에게톤(Egerton)필사본을 기증 받는 등⁶⁾ 대영박물관도서관의 組織과 장서규모는 크게 확충되었다.

한편 1830년대에 들어서는 英國의 歷史 및 文學筆寫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룬델콜렉션(Arundel collection)을 대영박물관도서관으로 옮겨왔고, 고전자료와 초기인쇄물, 그리고 1525년 콜론(Cologne)에서 인쇄된 영어신약성서를 포함하여 영어문학, 스페인의 시와 소설 등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당시 파리의 國民圖書館(Bibliothèque Nationale)이 7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大英博物館圖書館은 필사본을 비롯한 귀중하고 희귀한 資料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전체장서수는 약24만권에 머물러 있어 圖書館의 규모 및 國家圖書館으로서의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⁷⁾

그러나 1840년대 이후 大英博物館圖書館의 藏書는 파니찌의 노력으로 자료수집예산을 대폭 확보하는 동시에 납본제도의 실시 및 범위확대와 같

5) Frank Francis, "British Museum,"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Vol. 3(New York : Marcel Dekker, 1970), p. 293.

6) 上揭書, pp. 293~294.

7) Philip J. Weimerskirch, "Panizzi, Sir Anthony,"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Vol. 21(New York : Marcel Dekker, 1977), p. 314.

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크게 발전하였다.⁹⁾ 이 가운데 納本制度는 원래 1814년 11개 圖書館의 요구에 따라 英國에서 출판된 각저작의 사본을 공급하도록 하는 法令制定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1842년 7월 1일에는 이 法令의 적용대상 및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된 내용으로는, 런던에서 출판된 도서들은 출판이후 한달내에, 대영제국에서 출판된 도서들은 3개월내에, 식민지에서 출판된 도서들은 1년내에 사본을 대영박물관도서관에 배달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⁹⁾ 또한 파니찌는 대영박물관도서관에 소장된 장서들 가운데 미국에 관한 도서들이 1천권을 넘지 않음을 깨닫고, 당시 미국으로 추방된 스티븐스(Henry Stevens : 1819~1886)에게 미국의 도서를 구입하여 런던으로 되돌아 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활기찬 자료수집정책과 적극적인 납본제도의 적용으로 이 도서관에 추가된 圖書의 총수는 약30만2천권 정도로 이는 도서관설립이후 지난 80여년간 수집한 도서가 24만권임에 비추어 볼 때 대단한 것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파니찌의 노력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1870년에는 大英博物館圖書館의 藏書가 이미 백만권을 돌파하게 되었으며,¹⁰⁾ 명실공히 대영제국의 國家圖書館으로서 영국의 모든 도서와 외국의 주요문헌들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오늘날 세계 최대규모의 귀중한 도서관이 되는 터전을 이룩하였다.

(2)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目錄編纂

大英博物館圖書館의 목록편찬계획은 1770년 에어즈코프(Samuel Ays-

-
- 8) 대영박물관도서관은 1843년 의회로부터 3000파운드를 지원받아 3140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2409권을 납본받았으며, 1845년에는 4500파운드를 지원받아 7630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3596권을 납본 받았다.
- 9) Sidney L. Jackson,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the West : a brief history*(New York : McGraw-Hill, 1974), p. 373.
- 10) A. 헛셀, 西洋圖書館史, 李春熙譯(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1), p. 83.

cough)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¹¹⁾ 1785년까지는 당시 소장되어 있던 모든 필사본과 인쇄본의 1/3정도를 대상으로 筆寫目錄이 작성되었으며, 1787년에 나머지 印刷本을 대상으로 2절(folio)판 2책의 印刷冊子目錄을 간행하였다. 이 目錄은 大英博物館圖書館의 최초 인쇄목록으로 마티(P.M. Maty)와 하퍼(Rev. S. Harper)등이 완성하였는데, 1674년 보드리안도서관에서 간행한 목록과 동일한 著者名目錄이다.¹²⁾

이후 장서의 증가로 1807년에 새로운 目錄編纂이 시도되었다. 엘리스卿(Sir Henry Ellis)과 바버(H.H. Baber)가 주도한 이 目錄은 8절(octavo)판 7책의 인쇄책자목록으로 1813년부터 1819년까지 계속되었다. 目錄의 기입체가운데 A~F와 P,Q,R부분은 엘리스경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바버가 각각 편찬하였는데, 이러한 초기목록들은 아직까지 표제지를 벗어 나지 못한 記述法을 채택하고 있었다.¹³⁾ 그러나 이 目錄도 1823년 조오지 3세의 개인도서관이 병합된 이후에는 시대에 뒤진 목록이 되자, 당시 할 레이안장서의 目錄을 완성시킨 혼(T. Hartwell Horne)이 博物館圖書館理事會에 《Out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a Library》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목록편찬을 원하였다. 그가 제출한 이 보고서는 비록 상세하고 포괄적인 目錄規則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목록규칙과 다름 없는 《Observations on the manner in which titles of books are to be entered and classed》와 동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16개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즉 ① 서명양식, ② 著者の姓, ③ 익명도서, ④ 저자명의

11) K.G.B. Bakewell, *A Manual of Cataloguing Practice*(Oxford: Pergamon, 1972), p. 19.

12) 遊川雅俊, *目錄の歴史*(東京: 勁草書房, 1985), p. 148.

13) Dorothy May Norris, *A History of Cataloguing and Cataloguing Methods 1100~1850: With an Introductory Survey of Aricent Times*(London: Grafton, 1939), p. 201.

頭文字, ⑤ 서명철자, ⑥ 黑體文字(고딕활자)의 日字, ⑦ 서지적 진귀, ⑧ 초기 인쇄업자에 의한 인쇄도서 또는 皮紙圖書, ⑨ 초판, ⑩ 유명인의 筆寫註가 첨부된 도서, ⑪ 출판일자가 없는 도서, ⑫ 다른 도서에 응답하는 도서, ⑬ 편집자, ⑭ 再版, ⑮ 주제기입, ⑯ 목록편찬을 위한 일반적인 지시 등.

흔의 이러한 규칙들을 理事會에서는 수용하여, 1826년 흔에게 分類目錄의 편찬업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분류목록에 있어 의학, 화학, 철학과 같은 주제에서는 細區分이 거의 無用하게 나타나는 등 목록편찬업부가 진전이 없자 分類目錄編纂을 위한 8년간의 시간과 7천파운드의 경비를 낭비한 채 1834년에 업무를 중단하였다.¹⁴⁾

이처럼 大英博物館圖書館은 藏書의 지속적인 증가속에서도 목록편찬은 비능률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비판과 애로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著者目錄과 分類目錄에 대한 격심한 논란에 의한 것으로 어떠한 종류의 目錄編纂이 가장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1833년 印刷本部長(Keeper of printed books)으로 있던 바버는 理事會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목록편찬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파니저와 함께 목록편찬에 돌입하였다. 바버는 목록편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니저에게 새로운 목록편찬업무를 일임하였으며, 파니저는 이사회에 바버의 계획대로 목록을 편찬할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1836년에 들어 英國下院에서는 大英博物館의 상태 및 관리 등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目錄 및 편목방법에 관한 것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때 파니저는 目錄編纂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分類目錄을 매우

14) 上掲書, pp. 201~203.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主題索引은 著者目錄을 위해 보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알파벳순목록에 있어 개개 저작은 그 저자명아래 記入되어야 하고, 익명저작, 會報, 定期刊行物 등은 그 主題가 무엇이든 일정하게 지정된 표제아래에 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記入은 편집자, 번역자, 주석자 등의 이름을 포함하며, 標題紙에서 轉寫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¹⁵⁾

이리하여 그는 1838년 12월 이사회로부터 새로운 목록편찬에 관한 동의를 얻어내었다. 그러나 理事會는 바버가 제시한 규칙을 사용하기를 원하였으나 파니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目錄規則을 자신이 작성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납득시킨 후, 존즈(J.W. Jones), 와트(Thomas Watts), 에드워드(Edward Edwards) 그리고 페리(J.H. Parry) 등의 도움속에서 目錄規則을 작성하여 1839년 7월에 91개조의 최종규칙을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당시 이사회에 상정한 초안은 手書에 의한 것이었으며, 1841년에 간행된 目錄의 서두에 《大英博物館圖書館 圖書目錄編纂規則》(Rules for the Compilation of Catalogues of Book in Library of the British Museum)¹⁶⁾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때 간행된 目錄은 A를 포함한 제1권이었으며, 이후 편찬방법의 논란으로 목록인쇄는 중지되었다. 그러나 파니저는 筆寫目錄을 계속 편찬하여 1851년에 이를 완성하였고 열람도 시켰다. 또한 그는 사무용목록과 열람용목록을 겸용할 수 있는 ‘working catalogue’라는 새로운 목록을¹⁷⁾ 처음으로 고안하여 1849년부터 작성에 들어갔었다.¹⁸⁾

15) 上揭書, p. 205.

16) 파니저의 目錄規則이라고도 한다.

17) Sheaf catalogue라고도 부른다.

18) 澁川雅俊, 前揭書, p. 154.

한편 1841년의 목록간행중지 이후에는 장기간 目錄을 刊行하지 않았다가 1881년부터 책자형 인쇄목록을 간행하기 시작하여 1905년까지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의 완전한 최초판을 간행하였는데, 파니찌의 정신이 반영된 47권의 목록과 11권의 補遺版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장서목록이었다.

2. 파니찌의 圖書館活動

오늘날 파니찌는 大英博物館 歷史上 가장 창의력을 지닌 인물로, 또는 圖書館界의 가장 탁월한 立法者 등으로, 圖書館史에 있어서 위대한 人物 가운데 한 사람¹⁹⁾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그가 대영박물관도서관의 司書로 재직하면서 目錄規則 制定 및 目錄編纂에 기여한 것 외에도 자료수집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지원수립을 비롯하여 職員의 규모와 質的 향상, 직원급료 및 혜택증진, 圖書館奉仕 및 管理基準의 강화, 그리고 당시 가장 거대하고 편리한 독서실의 설계 등 圖書館管理에 전반적인 개혁을 불러 일으키는 활발하고도 기념비적인 업적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事後에 그의 명성이 더욱 빛나고 있는 점은²⁰⁾ 그의 出生 및 성장과 圖書館界의 活動 사이에는 크나큰 異質性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파니찌의 성장과정과 대영박물관도서관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러한 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파니찌는 1797년 9월 16일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Modena)의 소도시인 Brescello에서 약제사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1814년부터 팔마대학에서 法

19) James G. Olle, "Panizzi, Sir Anthony," in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hicago: ALA, 1980), p. 423.

20) 上掲書, 同面.

學을 修學한 후, 그는 그곳에서 팔라티나도서관(Biblioteca Palatina)의 사서 페짜나(Angelo Pezzana)를 돕고 있었으며, 또한 팔마의 공작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다수의 진귀도서를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1818년 졸업후 Brescello로 돌아온 파니찌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Brescello가 오스트리아 통치에 들어가자 반정부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위스를 거쳐 1823년 5월 英國 런던으로 망명하였다. 그 후 리버풀에서 이태리어 교사로 몇년간 있다가 1828년에 런던대학의 이태리語科 교수로 부임한 후 이태리語 文法 및 讀本에 필요한 책을 비롯하여 1830년부터 1834년에는 이태리의 낭만시에 관한 주요에세이를 9권에 걸쳐 수록하고 있는 《Oreando furioso》와 《Oreando innamorato》를 발행하였다. 특히 런던대학에서의 파니찌보수는 學生數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에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831년에 스펜서(Earl Spencer)와 그렌빌(Rt. Hon, Thomas Grenville)의 장서사본을 주로 조사한 《Bibliographical Notices of Some Early Editions of the Orlando Innamorato》를 개인적으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大英博物館圖書館의 印刷本部(Department of printed books)에 缺員이 있자 파니찌는 훗날 이 도서관의 주요이사가 된 브로우햄(Brougham)과 그렌빌 등의 추천으로 마침내 1831년 4월 27일 이 도서관의 보조원(extra assistant keeper)로 임명되었다. 入館後 그는 크로커(J.W. Croker)로 부터 구입한 4만권 이상의 불란서혁명기간 장서를 대상으로 목록편성에 들어가 거의 3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였다. 파니찌는 당시 논란이 되고 있는 目錄의 諸問題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書誌가 적절한 주제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²¹⁾ 당시 개인도서관이나 협회

21) Bakewell, 前掲書, 同面.

도서관 또는 서적판매상의 목록 등에서 포괄적인 主題接近法으로 널리 사용하여 온 分類目錄을 반대하고 알파벳순목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한편 파니저는 자신이 아직 圖書館에 대한 지식이 미비함을 깨닫고 편 목자 와트의 현신적 도움으로 심오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서신왕래 및 유럽대륙의 다수 도서관을 방문하여 圖書館과 目錄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1836년 대영박물관도서관의 관리, 상태에 대한 문제점과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등 유능하고 창의성 있는 司書로서의 자질을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그는 1837년에 바버의 후임으로 印刷本 部長으로 지명되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대견해가 수차례 표명되었으며, 그는 이러한 난관을 잘 극복하고 처음 얼마간은 장서개발에 전념하였다. 우선 그는 도서구입 예산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서정책²²⁾ 및 새로운 목록편성을 위한 견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理事會에 제출하여 目錄規則 制定과 目錄編纂의 동의를 얻어 내었으며, 1841년에는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印刷本 部長으로 재직하는 동안 파니저는 목록편찬에 관한 활동 못지 않게 장서확충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시도하였다. 특히 그는 1845년 1월에 대영박물관도서관의 장서가 매우 황폐하다는 비평문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인쇄도서소위원회를 결성하여 古印刷圖書 및 현행 간행물의 구입과 제본비 등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남본제도의 확대 및 강화로 대영박물관도서관을 견고하고 充實한 國家圖書館으로 이룩하여 놓았다.

그러나 1850년대에 들어서자 大英博物館圖書館은 圖書 및 독자를 위한 공간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 파니저는 자신이 직접 열람실을 설계하였다. 그는 열람실 주변을 書架로 둘러 싸이게 하고, 이동식

22) 파니저의 수서정책에 관한 내용은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Weimerskirch, 前掲書, p. 320.

서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동식 서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書庫와 열람실의 분리로 인한 공간절약 및 확보를 위해 당시까지의 관념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대영박물관의 건물변경 내지 개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建築方式은 圖書館建築史上 새로운 형태의 획기적인 것으로, 훗날 파리의 國民圖書館 건축에도 그 영향을 주었다.²³⁾

파니저는 이와 같은 다방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856년 3월 4일에는 엘리스경의 후임으로 館長이 되었으며, 10여년간 재임한 후 1866년 사임하였다. 그런데 그는 관장으로 재임한 기간에는 별로 도서관에 관계하지 않았었다. 그는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1869년에 KCB²⁴⁾ 爵位를 받아 파니저卿이 되었으며, 이후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1879년 4월 死亡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파니저는 매우 정열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大英博物館에 위대한 개혁을 이룩하였을 뿐만아니라 圖書館의 質的 발전과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大英博物館의 두번째 創設者로²⁵⁾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영박물관도서관에서의 두드러진 활동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語學과 文學에 관한 약간의 저작을 남겼을 뿐 圖書館學에 관한 著作은 거의 출판하지 않았었다.²⁶⁾

한편 파니저의 圖書館에 대한 깊은 열의와 적극적인 활동에는 항시 館內外 반대파들의 악의에 찬 비평이 끊임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의 계획과 구상의 실현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었다. 또한 異國人으로서 겪어야 하

23) 헛셀, 前揭書, pp. 83~84.

24) Knight Commander of the Bath

25) 上揭書, p. 82.

26) Olle, 前揭書, p. 424.

는 심한 견제와 좌절감도 경험하여야 했던 그는 이러한 난관을 잘 극복하였기에 오늘날 大英博物館圖書館歷史上 가장 뛰어난 司書로 칭송받고 있다.

Ⅲ.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의 意義와 體系 및 內容分析

1. 大英博物館圖書館 目錄規則의 意義

(1) 意義

대영박물관도서관은 점차 자료가 급증하자 기존의 目錄規則으로는 목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니찌에게 새로운 목록편성을 裁可하였다. 이에 파니찌는 동료들과 함께 1841년 91개조의 目錄規則을 印刷目錄과 더불어 간행하였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의 목록 및 목록편찬을 위한 지침서들은 대부분 편목자가 自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였기에 파니찌가 고안한 目錄規則도 원래는 대영박물관도서관에서 새로운 목록편성을 위한 것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목록규칙은 著者 및 書名記入의 원칙을 최초로 채택하고²⁷⁾ 있을 뿐만 아니라 各要素의 記述順序, 參照指示, 目錄의 排列 등 목록편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당시에는 매우 우수하고 완전한 목록규칙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 規則은 당시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의 특정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즉 圖書館의 장서점검을 제공하는 財産目錄으로서의 機能과 더불어 도서의 신속한 소재확인을 허용하는 檢索目錄으로서

27) Jackson, 前掲書, p. 379.

의 기능을 모두 반영하고²⁸⁾ 있었으며, 또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團體 著者의 개념과 기입을 최초로 설정하는 등 前時代와 現代를 명확히 區分하는 대변력의 업적으로²⁹⁾ 언급되고 있다. 이리하여 파니찌목록규칙은 종전의 一館中心目錄規則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른 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최초 규칙이 되었으며,³⁰⁾ 이 規則의 目錄法原理 및 편성법은 이후 목록규칙의 모범이 되었다.

파니찌목록규칙의 이와 같은 位相은 오늘날 英美目錄規則의 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各國의 목록규칙편찬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現代 目錄法의 母胎가 되었다.

(2) 특징

現代目錄法의 원리와 관행을 확립시킨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은 記入 및 記述에 있어서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目錄歷史上 최초의 포괄적이고 조직적 규칙인 동시에 以後의 目錄法原理에 그 기반을 형성하였다.

② 특정도서 소장유무 검색과 아울러 同一著者의 모든 저작을 하나의 標目아래, 그리고 특정저작의 모든 版과 번역본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알파벳순목록의 目的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한 規則이다.

③ 직접기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標題紙를 중요시하여 표제지에 수록된 정보 및 이름을 그대로 標目으로 선정하고 있다. 즉 圖書의 저자가 표제

28) Lois Mai Cha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Hill, 1981), p. 12.

29) Michael Carpenter, "Editor's Introduction," in "Rules for the Compilation the Catalogue," British Museum, in *Foundations of Cataloging*, edited by Michael Carpenter and Elaine Svenoniu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85), p. 1.

30) Kumar, 前掲書, p. 145.

지에 가명 또는 익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원명을 알고 있어도 가명이나 익명을 標目으로 선정하고, 무저자명도서에서 著者が 판명된 경우에도 저자를 標目으로 선정하지 않고 書名다음 각괄호에 저자명을 기입한다.³¹⁾

④ 著者名基本記入을 원칙으로 채택한 目錄規則으로, 이는 파니찌가 現代 目錄學에 끼친 가장 큰 공헌으로 지적되고 있다.

⑤ 團體名을 기본기입으로 인정하는 등 단체저자의 개념을 설정한 최초의 규칙이나, 著者性에 입각하여 合理化하지 않는 등³²⁾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며 애매한 점을 지니고 있다.

⑥ 書名記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령 무저자명도서의 경우 記入順을 서명가운데 기재된 人名을 제일 우선으로 記入하고 다음에 단체명을 기입하며, 단체명이 없으면 地名을 기입한다. 서명가운데 人名, 團體名, 地名도 없으면 편자명, 역자명을 기입하고, 이들도 없는 경우에는 서명가운데 최초의 명사를, 그리고 명사가 없는 경우 최초의 語를 각각 記入하도록 하는 등 書名記入을 가능한 피하고 있다.³³⁾

⑦ 基本記入에서 때로는 形式標目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20세기까지도 나타났다. 가령 學會, 大學, 協會 등의 團體들이 출판한 刊行物은 'ACADEMIES'라는 형식표목을, 정기간행물을 비롯하여 평론, 잡지, 신문 등은 'PERIODICAL PUBLICATION'이라는 형식표목을, 달력, 연감류는 'EPHEMERIDES'라는 형식표목을, 무저자명저작가운데 目錄類는 'CATALOGUES'를, 사전류 및 어휘집 등은 'DICTIONARIES'를, 事典類는 'ENCYCLOPEDIAS'를 그리고 전례도서 등은 'LITURGIES'를

31) 高橋泰西郎著作集編集委員會 編, 目錄規則記入論(東京: 早川圖書, 1978), p. 18.

32) Michael Carpenter, *Corporate Authorship, Its Role in Library Cataloging* (Westport, Connecticut: Green, 1981), p. 9.

33) 高橋泰西郎, 前掲書, p. 19.

각각 형식표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성서류의 일반적인 標目으로 'Bible'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統一標題의 표목설정에 그 원조가 되고 있다.

⑨ 91개조의 목록규칙 가운데 記述法과 編成法에 관한 것은 20여개조이고, 그외는 모두 著者名 目錄에 있어 基本記入의 標目選定과 그 形式 등 주로 記入法에 관한 내용들이다.

2.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의 體系 및 內容分析

(1) 體系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이 간행되던 당시에는 아직까지 일정한 목록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인 만큼, 오늘날의 目錄規則과 같은 定型的인 體系나 區分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목록규칙 역시 일정한 체계 및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고 있다. 이처럼 목록규칙의 章節이나 條文의 포제도 없는 규칙의 체계를 일정하게 세우기는 애매하나, 高稿泰四郎³⁴⁾은 내용 및 성격상의 관련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제1조(總則)

제2조~제31조(記入要素에 관한 규칙)

2~17조 : 著者標目

18~31조 : 記述

제32조~제53조(각종도서에 있어서의 規則)

제52조~제68조(參照)

제69조~제78조(排列)

34) 上掲書, 同面.

제79조~제91조(形式標目으로 記入되는 圖書)

그러나 본고에서는 目錄規則의 內容分析을 위해 이러한 體系가운데 標目に 관한 내용과 記述에 관한 내용을 각각 분리시키고, 표목선정에 관한 조항들을 하나로 묶어 다음과 같이, 즉 ① 標目に 관한 규칙, ② 記述에 관한 규칙, ③ 參照에 관한 규칙, ④ 排列에 관한 규칙, ⑤ 形式標目に 관한 규칙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2) 內容分析^{35, 36)}

① 標目に 관한 規則

標目に 관한 규칙들은 규칙2에서 규칙17까지와 규칙32에서 규칙53까지, 그리고 규칙80, 규칙84 등, 目錄規則의 全般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個人 著者, 團體著者, 무저자명도서, 합집, 번역서, 주석서 등 각종 도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모두 40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규칙2는 단일개인저자에 관한 조항으로 그 記入은 저자의 姓으로 하고 있고, 규칙3은 2인이상의 共著者에 관한 조항으로 그 記入은 첫번째 저자로 하고 있다. 규칙4에서 규칙6까지는 특수계층에 관한 조항들로 君主, 皇(王)子 (규칙4), 동양인의 저자 및 율법박사(규칙5) 등의 記入은 저자의 첫째이름으로, 그리고 修道者(규칙6)는 세례명으로 하고 있다. 규칙7은 學位論文에 관한 조항으로 학위논문의 응답자 또는 변호자를 著者로 간주하고 있고, 규칙8은 이름에 관한 조항으로 저자가 세례명이나 첫째이름만을 사용할 때 이러한 이름들은 표목으로 채용되고 있다. 규칙10에서 규칙13까지는 변경된 人名 및 地名, 外國人名의 記入 등에 관한 조항들로, 다양한 言語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명은 모국어형으로(규칙10),

35) 上揭書, pp. 20~31.

36) British Museum, 前揭書, pp. 3~14.

출판된 저작의 저자명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이전의 처음이름으로(규칙 11) 각각 記入하고 있고, 관사나 전치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 著者名(규칙12)과 독일인명의 변모음처리(규칙13)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 14에서 규칙17까지는 貴族의 姓(규칙14), 主敎, 大主敎(규칙15)등의 표목기입과 그 人名의 形式(규칙16), 著者의 社會上 地位 또는 칭호의 기입방식(규칙17)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團體著者에 관한 내용은 규칙9에 “집회, 관청 또는 단체에 의하여 일치되고 공인된 또는 출판된 모든 결의, 결정 또는 그외의 문헌은 그 명칭이 유래된 것의 國名 또는 地名을 標目으로 記入한다. 이러한 명칭이 결여된 때는 그 결의가 출판된 地名을 표목으로 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團體가 발행한 출판물을 특별한 종류의 출판물로 취급하는등 團體著者의 概念 또는 단체가 작품의 저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團體名을 국명 또는 지명아래에 기입하고 있어³⁷⁾ 아직 단체명을 표목으로 직접 기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England. Commons, House of
London. Corporation of the Sons of the Clergy

단체저자에 관한 내용은 形式標目에 관한 조항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즉 아카데미, 大學, 協會, 공공시설, 학술 및 문학단체 등이 발행한 모든 文書, 論文集, 會報 등은 ‘ACADEMIES’라는 형식표목을 취하도록(규칙80)하고 있으며, 종교 및 군사적 의식은 그 명칭을 표목으로 기입하도록(규칙84) 각각 규정하고 있다.

37) 澁川雅俊, 前掲書, p. 153.

규칙32에서 규칙53까지는 각종도서에 관한 규칙으로, 이 가운데 규칙32는 頭字에 의한 著作에 관한 조항으로 이러한 저작은 頭字最後部分을 記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33에서 규칙36까지와 규칙38에서 규칙40까지는 無著者名圖書에 관한 조항들로 이 가운데 규칙33은 무저자명도서의 個人名에 관한 조항으로 저자명이 표제지 또는 그 저작의 다른 부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떤 사람의 행동 또는 생애에 관계되어 있는 무저자명출판물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著作의 書名에 나타나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편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34는 無著者名圖書의 團體名, 地名에 관한 조항으로 個人名이 書名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書名에 있는 집회, 단체, 협회, 기관, 교파 또는 종파명칭을 규칙9의 규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35는 無著者名圖書의 編者, 譯者에 관한 조항으로 전술한 규칙에 따라 집회명 또는 국명이 書名에 나타나 있지 않고 編者가 있으면 編者名을, 그리고 편자명이 없고 譯者가 있으면 譯者名을 표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36은 무저자명도서의 형용사에 관한 조항으로 個人, 黨派, 土地 또는 宗派名으로 사용된 형용사는 그들의 이름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38은 前述한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無著者名著作은 書名가운데 최초의 名詞를 표목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39는 무저자명도서에서 著者表示로의 補記에 관한 조항으로 무저자명출판물의 저자명을 편목자가 알고 있거나 추정하는 경우 이름을 書名다음에 각괄호로 삼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40은 무저자명 註釋 및 批評에 관한 조항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出版物의 書名가운데 주석 또는 비평의 대상이 되는 著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著作은 비평 또는 주석의 대상이 되는 저작의 표목과 동일한 표목으로 記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37은 두개의 이름,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항으로

두개의 이름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최초의 이름을 선정하고, 민사소송의 보고는 標題紙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의 이름이, 그리고 형사소송은 피고자의 이름이 標目으로 채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41은 익명도서에 관한 조항으로 이러한 圖書는 저자의 익명으로 記入하고 익명다음에 각괄호를 사용하여 i.e.라는 문자를 선행한 후 本名을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42는 가명, 학문상의 이름에 관한 조항으로 가명 또는 관직, 직업, 당파, 作者의 자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이름은 본명으로 취급하며 학문상의 이름도 동일하게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43은 僞作에 관한 조항으로 標題紙에 거짓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저작은 익명도서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44에서 규칙49까지는 合集에 관한 조항들로 이 가운데 규칙44는 多數著者의 著作合集에 관한 조항으로 여러 사람들이 출판한 다수저자의 저작은 合集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별도 記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45는 合集의 編者名 또는 제1저자에 관한 조항으로 여러 主題에 관계하는 다수저자의 저작을 포함한 일련의 저작은 편자명으로 記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46은 合集의 編者가 없는 圖書에 관한 조항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無著者名著作과 같은 方式으로 綜合書名으로 記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47과 규칙48은 法律等の 合集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 칙령, 명령 또는 그외의 유사한 文書 등의 일반적인 合集은 그 이름에서 또는 그 이름에 의해 이들의 認可, 署名, 公布한 洲 또는 國家 명칭으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주 또는 국가의 법률, 칙령 등의 合集은 규칙45 또는 규칙46에 따라 편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49는 법률 등의 合集가운데 특정주제에 관한 조항으로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특정 주제를 간단하게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법률 또는 특정주석이나 논문에 대한 本文으로 사용된 法律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50은 번역자,

주석자 표시에 관한 조항으로 이들의 이름이 표제지에 있으면 目錄에 記述하고, 표제지에 없으나 편목자가 추정할 수 있으면 각괄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51에서 규칙53까지는 번역서, 주석서에 관한 조항들로 이 가운데 규칙51에서 번역자의 저작은 원저자의 이름으로 記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52는 번역서의 서명에 관한 조항으로 번역은 原文直後에 記入하고 書名이 변경되었을 경우 번역서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記入하거나 英語로 간단한 설명을 각괄호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53은 本文을 동반하지 않은 註釋書에 관한 조항으로 이러한 경우 주석자의 이름으로 記入하고 주석자의 이름이 없거나 가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무저자명저작 또는 익명을 사용한 저작의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記述에 관한 規則

記述에 관한 규칙들은 규칙18에서 규칙31까지로 目錄規則의 前半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書名, 版次事項, 대조사항, 출판사항, 주기방법 등 모두 14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규칙18은 서명 및 판차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이는 著者名을 標目으로 채택한 후 그 다음에 書名을 記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에는 필요에 따라 표제지에서 저자에 관한 것만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내용과 正字法을 유지하고 版次가 표제지에 나타나 있으면 記入하라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서명사항다음에 판차사항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記述方法 및 순서는 英美目錄規則第2版 등을 비롯한 오늘날의 여러 목록규칙에서도 크게 변경되지 않고 지속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은 記述部分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조항이다. 규칙19는 不完全註記에 관한 조항으로 圖書內에서 현저한 불완전성 및 특수성, 예를 들면 취소되거나 중복된 章 등을 記入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규칙20에서 규칙24까지는 圖書의 특수상황에 관한 규칙들이다. 즉 규칙20은 標題紙가 없는 圖書에 관한 조항으로 그 내용이 머릿표제(head-title)에 간략하나 충분하게 記述되어 있으면 本文의 처음에 있는 서명앞에 이태릭체로 'begin'이라는 단어를 記入하고, 본문의 처음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版權紙의 書名에 따라 記入하고 'end'라는 단어를 그 앞에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21은 附錄이 있는 圖書에 관한 조항으로 어떤 出版物의 書名內에 하나 또는 둘이상의 獨立著作이 그 출판물을 구성하는 一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主出版物 記入內에 동일한 모양으로 記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22는 東洋語圖書에 관한 조항으로 東洋文字 또는 言語로 쓰여진 모든 著作은 별도로 제정한 특별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補遺卷은 달리 편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23은 2개국어 이상의 書名, 本文의 國語에 관한 조항으로 原文을 동반한 2개국어 이상의 著作들은 번역서명이 아닐 경우에만 원문으로 記入하고 原文이 없는 경우에는 書名으로 사용된 최초의 언어가 선정되고, 모든 경우에는 圖書에 사용된 다수언어를 이태릭체로 서명끝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24는 本文의 國語와 다른 書名에 관한 조항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前述한 규칙에 따라 記入하고, 다만 서명끝에 이태릭체로 그 著作이 무슨 언어로 쓰여졌는가를 記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25와 규칙26은 각각 卷數表示와 部 또는 卷에 관한 즉 對照事項에 관한 조항으로 部數, 卷數, 分冊數 또는 각저자의 著作에 있어 특유한 區分數는 표제지의 단어에 의해 記入하고 한 저작이 동일페이지의 연속 또는 페이지매김이 없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나누어진 부분들이 한 著作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들을 각각 部 또는 卷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27은 出版地, 出版者, 出版年度 및 크기 등 出版事項에 관한 조항으로 圖書가 출판된 地名을 記入하고, 古代 또는 매우 유명

한 出版者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출판자명을 기입하며 그 다음 출판년을 기입한다. 만일 出版年과 出版地를 불명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 각괄호를 사용하여 이들을 記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出版事項의 끝에 fol., 4to, 8vo, &c 등과 같이 圖書의 크기를 folio, quarto, octavo 라는 형식으로 표기하면서 이를 版事項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이 目錄規則은 대부분의 다른 목록규칙과는 달리 출판사항을 대조사항다음에 記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규칙28은 初期印刷本의 활자체에 관한 조항으로 초기의 인쇄본이 고딕체나 활자체(Gothic or black letter)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書名의 끝부분에 G.L. 혹은 B.L. 이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목록규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다. 규칙29는 圖書의 특이성에 관한 조항으로 皮紙, 공단이나 훌륭한 종이로 인쇄되거나 혹은 고전작가, 1700년이전에 활동한 유명작가의 初版, 私家版, 初期版의 複製後刷, 한정판 등과 같은 특이한 내용들을 記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30은 필사본저자, 소장자에 관한 조항으로 필사본저자의 註가 알려져 있으면 각괄호를 사용하여 이를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31은 註記方法에 관한 조항으로 初版은 서명뒤에 대문자의 이태릭체로 ED. PR. 이라는 단어를 기입하며, 필사본은 이태릭체로 서명뒤에 그리고 그 卷의 크기앞에 : M.S. notes. 라고 표시한다. 그리고 註記가 별로 두드러지 않거나 혹은 역으로 풍부하면 FEW 또는 COPIOUS로, 皮紙로 출판되었으면 ON VELLUM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參照에 관한 規則

參照에 관한 규칙들은 규칙54에서 규칙68까지와 규칙83, 규칙87, 규칙89, 규칙91 등 目錄規則의 中半部와 後半部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參照通則, 유형별 참조규칙 등 모두 19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규칙54는 參照에 관한 通則으로서 相互參照의 사용을 지시하

고 있다. 이 目錄規則은 상호참조의 유형을 i) 이름에서 이름으로, ii) 이름에서 저작으로, 그리고 iii) 저작에서 저작으로 등 세가지로 구분한 후 (규칙5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유형의 相互參照는 이름의 양자택일형식에 사용되는 것으로,³⁸⁾ 규칙56에서 규칙60까지의 5개 규칙은 모두 첫째유형의 상호참조를 적용시킨 규칙들이다. 즉 규칙56은 貴族의 칭호 및 주교, 대주교의 직명에서 저자의 家名 혹은 첫째이름으로의 參照를, 규칙57은 저자의 家名에서 세례명 또는 첫째이름으로의 참조를, 규칙58은 基本記入에 채용된 형식과 다른 방법으로 철자되거나 사용된 姓에서 표목으로의 參照를, 규칙59는 기본기입의 標目으로 사용한 이름 또는 姓 이외에 저자가 사용한 이름 또는 성에서 표목으로의 참조를 각각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60은 著者の 本名에서 假名으로의 참조를 지시하고 있는데, 標目に pseud.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61에서 규칙68까지는 相互參照의 두번째 혹은 세번째 유형이 복합된 규칙으로, 규칙61은 編者名 또는 어떤 저작에 대한 그 저자의 傳記作者名에서 기본기입으로의 참조를, 규칙62는 無著者名著作 또는 익명 저작으로 저자명을 표제에 또는 저작의 다른 부분에서 보충되는 경우에는 그 저자명에서 基本記入으로, 그리고 어떤 저작을 계속한 저자이름 및 주석자, 주해자에서 기본기입으로의 참조를, 규칙63은 전기 또는 說話의 이름에서 저자로의 參照를, 규칙64는 기본기입의 표목으로 선택된 이름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이름에서 기본기입으로의 참조를, 규칙65는 어떤 著者の 著作全體 또는 그 대부분이 註釋 또는 註解對象이 된 경우 그 著者에서 註釋者 또는 註解者 이름으로의 參照를, 규칙66은 合集에 포함된 著作 또는 저작의 대부분이 合集自體의 記入에 있어서 特記하는 중요

38) Bakewell, 前掲書, p. 26.

도가 고려될 때 그 著者에서 合集 基本記入으로의 參照를, 규칙67은 어떤 저자의 全著作 또는 그 대부분이 다른 多作者 또는 譯者의 全集에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저자명에서 기본기입으로의 참조를, 규칙68은 어떤 國家 또는 국가에 속하는 법률합집이 다른 표목으로 記入될 때는 國名 또는 國家名에서 基本記入으로의 參照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형식표목에서의 參照에 관한 조항으로 3개의 규칙이 있다. 이 가운데 규칙83은 달력등의 표제지에 기재되어 있는 저자명, 편자명 또는 團體의 특이한 명칭 등에서 基本記入으로의 參照를, 규칙87은 무저자명목록의 편성자에서 기본기입으로의 참조를, 그리고 사전의 경우 편자명에서 기본기입으로의 참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규칙91은 교회, 단체, 종파, 수도회 또는 예배장소의 특정한 이름 또는 칭호에서 기본기입으로의 참조를 규정하고 있다.

④ 排列에 관한 規則

排列에 관한 規則들은 규칙69에서 규칙78까지 그리고 규칙79의 일부 등 目錄規則의 中半部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參照, 全集, 選集, 個人著作 등의 배열 등 모두 11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규칙69는 記入順序에 관한 조항으로 기입서두에 위치한 相互參照들은 이 참조가 도달하는 記入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70은 全集의 배열순서에 관한 조항으로 原文의 국어만으로 이루어진 한 著者의 全集은 참조의 직후에 배열하도록 하고, 出版年이 없는 版과 出版年을 유사하게도 확인할 수 없는 版은 出版年이 있는 版과 出版年이 명확하거나 또는 유사한 出版年을 제공하는 版들보다 先行하며 後着는 그 圖書에 기재된 出版年에 따라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편자에 대한 版, 특정판 또는 본문에 의한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版, 동일주기 또는 주석을 지닌 版 등은 상호 그 年代順으로 배열하도록

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71은 번역을 동반한 全集의 배열에 관한 조항으로 이러한 전집의 원문은 원문만의 전집다음에 原文과 동일순서로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72는 전집번역의 배열에 관한 조항으로 全集의 라틴어번역은 라틴어 이외의 國語로 번역된 것 앞에 前述한 순서로 배열하고 라틴어번역다음에는 영어번역을 배열하도록 하고, 동일언어로의 번역 및 그 諸版은 원문기입의 배열에 사용된 규칙에 따라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73은 合集의 排列에 관한 조항으로 동일저자의 2개이상 저작의 合集은 그 著者の 全集 排列에 사용된 규칙에 따라 전집번역 다음에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74는 選集의 배열에 관한 조항으로 한 저자의 著作에서 선집 또는 단편집은 그 著作의 부분적 合集다음에 전술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75는 개인저작의 배열에 관한 조항으로 同一著者の 獨立著作은 상호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그 범위내의 각저작의 諸版 및 번역은 한 저자의 전집배열방법과 동일하게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76은 개개저작의 일부분의 배열에 관한 조항으로 독립저작의 일부분은 前述한 순서에 따라 그 일부분이 포함된 원저작의 다음에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77과 규칙78은 저자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명의 배열과 個人名 이외의 것의 배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규칙79에는 聖書의 다양한 형태 및 양식에 따른 배열이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헤브라이 및 그리스문어로 쓰여진 新·旧約聖書의 경우는 年代順으로 배열하고, 原文을 포함한 多國語版과 번역어가 많은 版을 먼저 배열하며 註釋本의 경우는 本文의 版과 동일한 순서로 동일원칙에 따라 배열하는 등 배열순서를 열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⑤ 形式標目에 관한 規則

형식표목에 관한 규칙들은 규칙79에서 규칙82까지와 규칙85에서 규칙90까지로 目錄規則의 後半部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聖書, 아카데미, 定期刊行物, 무저자명목록, 무저자명사전, 事典, 전례문 등 9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규칙79는 신·구약성서 및 그 일부분에 관한 조항으로 그 記入은 형식표목 'Bible'로 하고 있고, 규칙80은 學會, 大學, 문학단체 및 공공단체 등 團體들이 출판한 간행물에 관한 조항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이 'ACADEMIES'라는 형식표목으로 기입되고 그 다음에 영문의 國名 및 地名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⁹⁾

Academies, etc.—Europe—France—Paris—Academie Francaises

Academies. etc.—Europe—France—Paris—Academie Gallica

Academies, etc.—Europe—France—Paris—Academie Parisiensis

규칙81은 定期刊行物을 비롯하여 평론, 잡지, 신문, 연보 등에 관한 조항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그 言語와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형식표목 'PERIODICAL PUBLICATION'으로 기입되고 그 아래에 서명 가운데 최초의 명사에 의한 알파벳순서로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82는 달력에 관한 조항으로 이는 어떤 종류이든지, 그리고 그 姊妹書 및 부록 등도 모두 형식표목 'EPHEMERIDES'로 記入되고 그 아래에 서명가운데 최초의 명사에 의한 알파벳순서로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85는 무저자명목록에 관한 조항으로 이들은 형식표목 'CATALOGUES'로 記入되고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의 목록으로 구분되고 있다.

i) 공공단체의 목록, ii) 판매 또는 그외의 목적으로 작성된 개인수집물 목록, iii) 소유자에 관계없이 일반 및 특수한 물품목록, iv) 소유자가 분명

39) 澁川雅俊, 前掲書, 同面.

하지 않으며 판매용이 아닌 수집물목록, v) 판매자목록, vi) 이상의 부류에 해당되지 않은 판매목록 등이며, 규칙86은 이目錄들의 적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규칙88은 무저자명사전에 관한 조항으로 사전이외의 어휘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저자명사전은 형식표목 'DICTIONARIES'로記入되고 그 아래에 서명가운데 최초명사에 의한 알파벳순서로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89는 事典에 관한 조항으로 표제지에 편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전들은 형식표목 'ENCYCLOPEDIAS'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90은 미사전례서, 聖務日課書, 公定儀式文, 기도서, 전례문 및 同種類의 저작에 관한 조항으로 이들은 형식표목 'LITURGIES'아래에서 전술한 자료들을 사용하는 단체, 종파, 수도회의 영어명칭에 의한 알파벳순서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要約 및 結論

이상에서 오늘날 英美目錄規則의 기원이 될 뿐만 아니라 現代目錄法の 원칙과 관행을 이룩한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의 內容分析과 아울러 이 圖書館의 成立과 발전과정, 그리고 이 도서관의 개혁과 목록규칙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파니저의 圖書館活動 등에 관하여 고찰한 결과,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파니저는 당시 大英博物館圖書館의 장서증가와 목록편성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목록유지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현대목록법의 원리와 관행이 되고 있는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制定 및 목록편찬으로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해 활기찬 수서정책확립과 적극적인 납본제도의 적용으로 이 圖書館이 오늘날 세계

최대규모의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는 圖書館設計를 비롯하여 도서관봉사 및 관리기준의 강화, 그리고 직원의 규모와 질 개선 등 圖書館管理에 전반적인 개혁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大英博物館圖書館歷史上 가장 창의력을 지닌 인물이 되고 있다.

(2)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은,

① 標目の 選定과 形式, 排列, 記述, 參照 등 목록편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完全한 목록규칙이며,

② 91개조의 규칙 가운데 대부분이 표목선정과 형식 등 주로 記入法에 관한 내용들이며,

③ 著者名基本記入을 원칙으로 하고 書名記入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④ 團體著者の 概念과 기본기입을 설정한 최초의 규칙이나 결코 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다루지 못하였으며,

⑤ 團體, 定期刊行物, 無著者名目錄·辭典類, 그리고 典禮書 등의 기본기입에 形式標目を, 또한 聖書類에는 일반적인 표목으로 'Bible'을 제시하고 있으며,

⑥ 版次事項이 서명사항 다음에 記述되어 있으며,

⑦ 出版地, 出版者, 出版年 등 出版事項의 요소와 순서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끝부분에 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參考文獻>

脚註로 代身함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ritish Museum Library and Its Cataloguing Rules

Bae Young—hw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British Museum Library and its cataloguing rules which really marked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ra of cataloguing.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Sir Anthony Panizzi was the most creative force in the history of the British Museum Library. He devoted himself to the formation of the British Museum Library cataloguing policy and the compilation of printed catalogues. Moreover, he laid down the sound acquisitions policy and the vigorous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deposit privilege. He designed a great circular reading room and raised standards of library service and administration.

(2) British Museum Library Cataloguing Rules :

① are notable for their pioneering efforts—this was the first major catalogue code—and for their influence on all subsequent codes.

② introduced the concept of corporate authorship but has never dealt with problem very satisfactory.

③ went to great lengths to avoid title entry.

④ used a number of form heading, example for, ACADEMIES, PERIODICAL PUBLICATION, EPHEMERIDES, CATALOGUES etc.

* Instruct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